

[특집]

교도권과 역사 속에 나타난 재속회의 사도직

■
김 길 민

[수원교구 단대동성당 주임신부]

들어가는 말

1. 산 갈로에서의 모임과 구법전에서의 인가 불가능성
2. 사도 헌장 PME
3. 자의 교서 *Primo Feliciter*와 훈령 *Cum Santissimus*
4. 까스텔누오보 폴리야니 회의
5. 완덕신분에 대한 전체 정기회의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7. 제1회 재속회 국제회의 — 합법적인 다양성(*legittimo pluralismo*)
8. 성 바오로 6세 교황 — 올바른 다양성(*giusto pluralismo*)
9. 1983년 새 교회법전
10. '수도회와 재속회 성' 전체 회의 — 수도회와 다름
11.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건강한 다양성(*sano pluralismo*)
12. 베네딕토 16세 교황
13. 프란치스코 교황

종합과 나가는 말

1. 새로운 성소인 재속회의 사도직 — 세상 안에 숨겨진 사도직
2. 수도회로의 회귀 위험
3. 다양성의 문제(*pluralismo*)

들어가는 말

비오 12세 교황이 사도 헌장 「쁘로비다 마테르 에끌레시아」(Provida Mater Ecclesia, 약어: PME, 섭리의 어머니이신 교회)¹⁾로 재속

1) PIUS XII, const. ap., *Provida Mater Ecclesia*, 2 feb. 1947, AAS, 39 (1947) 114~124. 하지만, 교황의 문헌들은 CMIS(Conferenza Mondiale degli Istituti Secolari)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사이트를 인용한다(<https://www.cmis-int.org/it/documenti/magistero-della-chiesa/>). 다만, 영어본과 이탈리아어본이 조금 다르기에 이탈리아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회를 처음 인가한 지 76년이 되었지만, 교회와 사회에서 재속성과 봉헌 그리고 사도직을 통합하여 사는 재속회원들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2023년에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재속회 연합 총회”(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에서조차 회원들 사이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세계재속회연합(Conferenza Mondiale degli Istituti Secolari)에서 발행하는 “Dialogo” 잡지에 소개된 회들을 분석²⁾하면, 회의 사도직을 기준으로 재속회들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회의 고유한 사도직이 없는 회들로서 명백하게 “회의 고유한 사도직이 없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을 “침투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회로 표현한다. 두 번째는 부분적일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회의 고유한 사도직이 있는 회들로서, 출판사나 피정의 집, 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유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재속성(Secolarità)을 달리 해석하면서, 사도직의 모습이 다른 회들이 “재속회”라는 한 울타리에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모습과 발전 과정을 교도권의 가르침과 재속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³⁾

2)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1973~1992년까지 “Dialogo”에 소개된 96개 회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고유한 사도직이 없는 회가 19개, 부분적으로라도 회의 고유한 사도직이 있는 회가 30개이며, 47개의 회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추출하기가 어려웠다. Cf. 김길민(Kilmin Kim), *L'identità degli Istituti Secolari*, Dissertatio ad Doctoratum in Facultate Iure Canonico, Roma, 1994, 12~17.

3) 이 글에서는 먼저 줄거인 박사 학위 논문의 순서와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직을 고찰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전에 쓴 글의 특히 5장(172~179쪽)의 부분에서도 사도직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한다.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이성과 신앙』 57(2014), 133~199.

1. 산 갈로에서의 모임과 구법전에서의 인가 불가능성

1938년에 스위스의 산갈로에서 이루어진 모임의 참석자들은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비슷한 모습인 것에 놀라워하며, 언제나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성령의 활동에 대해 기뻐하였다. “이들은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심연부터 완전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며 재속성과 봉헌을 교회 안에서 조화시키는 삶을 원하던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⁴⁾ 하지만 오랜 시간 교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비오 5세 교황이 1566년에 성식 서원만을 인정하고, 1668년에는 성식 서원을 하지 않는 남자회들을 없앤 후 교회 내에서 단순 서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참 후 주교성성의 교령 “가톨릭교회”(1889)와 레오 13세의 사도 헌장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1900)를 통해서 단순 서원이 인정된다.⁵⁾ 나중에 재속회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들은 그들이 공적 서원이 아니라 사적 서원을 발하기에 수도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단지 신심 단체로서 육성하도록 하였다.

1917년 비오-베네딕도 법전은 487~681조에서 수도자들에 대해 다룬다. 488조에서는 성식 수도회(Ordo)와 단식 수도회(Congregatio)에 대해 정의한다.⁶⁾ 수도회와 관련한 마지막 부분에서(673~681조) 서원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회(societas in communi viventium sine votis)에 대해 다루는데, 고유한 의미의 수도회가 아니므로, 그 회원은 수도자로 불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규정은 수도자들 부분

4)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147.

5) Decreto *Ecclesia Catholica* della Sacra Congregazione dei Vescovi e Regolari (11 agosto 1889) e la Costituzione Apostolica *Conditae a Christo* (8 dicembre 1900).

6) 1917 비오-베네딕도 법전, Can. 488. 2º Ordinis, religio in qua vota sollemnia nuncupantur; [...] Congregationis religiosae vel Congregationis simpliciter, religio in qua vota dumtaxat simplicia sive perpetua sive temporaria emittuntur [...].

에 자리하고 있다. 신자들의 단체에 대해서는 700조부터 다루는데, 그 가운데 경신단(Piae uniones)은 어떠한 신심 사업이나 애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신자의 회를 말한다. 1917년 법전의 구조에서는, 재속회의 성격을 지닌 회는 이 경신단으로 교회 인가를 받아야 했다.

2. 사도 현장 PME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1947년에 비오 12세 교황이 이들을 인정하는 역사적 문헌인 사도 현장 PME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재속회”로 명명하였다.⁷⁾ 이 문서를 통하여 재속회의 삶이 인정받고, 교회 내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 것이다.

이 문서에서 재속회는 “3번째” 단계로 표현된다. 즉, 첫 번째는 성식 수도회와 단식 수도회이고, 두 번째는 서원 없는 공동생활회이다. 이 뒤에 사도직의 필요성에 잘 맞춰진 재속회가 생긴다.

이들의 사도직은 수도자들이 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사도직을 “보충하는 사도직”을 수행한다. “지난 세기 전반기에 출현한 이러한 단체들은 [...] 세속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따르며, 그 불확실한 시대에는 수도 공동체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자유롭게 긴요한 애덕사업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⁸⁾ 이렇게 애덕사업으로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은 17년 법전에서 경신단의 목적을 애덕사업으로 규정한 것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완덕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며, 교회법적인 수도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완덕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사도직을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려운 장소나 시간에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⁹⁾

7) PME 9번. Queste Associazioni, che d'ora in poi saranno chiamate “Istituti Secolari”.

8) Ibidem.

9) PME 10번.

이 문서를 촉발한 회들 중 많은 회에는, 기존의 수도회와 다르기는 하지만, 수도 생활을 모방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¹⁰⁾ 이런 기 반 위에서 재속회를 탄생시키는 문헌이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수도 생활에 대해 자주 언급하여 재속회가 따라가야 할 모형으로 수도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집과 공동생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베이에(J. Beyer)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디에르나(A. Diern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PME는 수도 생활이라는 체계에 재속회라는 세 번째를 넣었다. 이 회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할 수 없는 장소나 영역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보충의 사도직’을 한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길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결국 전통적인 도식에 얽혀있는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였다.”¹¹⁾

3. 자의 교서 *Primo Feliciter*와 훈령 *Cum Santissimus*

재속회를 탄생시킨 사도 헌장 PME를 반포한 지 불과 13개월 만에, 같은 교황 비오 12세는 자의 교서인 뿌리모 펠리치테르(*Motu Proprio Primo Feliciter*: “첫 행복” 약어 PF)를 반포한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관할 기관인 수도회성성에서 *Cum Santissimus* 훈령을 발표한다.

베이에를 비롯한 학자들은 교황의 이 두 문헌을 비교하면서 PME가 법적인 측면에서 “인가” 등에 대해 치중했다면, PF는 세상에서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에서 했던 여러 경험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 1950년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과 평신도 신학이 많이 발전했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있었다. “영성적인 측면에

10) Cf. J. BEYER, “Secolarità e consacrazione della vita negli Istituti Secolari”, in *Gli istituti secolari. Consacrazione, secolarità, apostolato*, Roma 1970, 52.

11) A. DIERNA, *Una consacrazione secolare per una missione laicale*, VC, 25(1989), 85.

서 성화와 일상생활, 성화와 신분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¹²⁾ 점에서 평신도 신학이 발전하였다. 이런 발전된 신학 사상이 이 문헌에 녹아들었다.

PME 반포 75년이 지난 후 프란치스코 교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 두 문헌을 비교한다. “PME가 단순히 ‘회’로서 보았다면, PF는 이들의 카리스마의 특별한 정체성이 재속회의 존재 이유인 재속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추가했으며, 이는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다. PF를 통하여 세상에서 봉헌을 하는 이 성소의 형식에 대해 ‘완전한 합법화’가 이루어졌다.”¹³⁾

3.1. 봉헌과 사도직의 통합

PME에서는 그리스도께 삶을 봉헌(*la piena dedizione e consacrazione a Cristo*)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비해 PF에서는 “하느님과 영혼들에게 하는 완전한 봉헌을 통하여”(per la piena consacrazione a Dio ed alle anime)라는 표현으로 봉헌과 사도직이 통합된다. 즉 이들의 봉헌은 하느님께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봉헌이 결국 이들의 사도직인 것이다. 이 사도직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3.2. 사도직과 재속성의 통합

PF에서는 사도직과 재속성이 통합된다. 이들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른바 세상 속으로부터(*in saeculo, veluti ex saeculo*)’¹⁴⁾ 세상을

12) G. MOIOLI, “«Consacrazione» e «secolarità»: problema degli Istituti Secolari o problema ecclesologico?”, in *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d'oggi*, Roma 1979, 24.

13)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alla Presidente della Conferenza Mondiale degli Istituti Secolari in occasione del 75° anniversario della Costituzione Apostolica Provida Mater Ecclesia, 2 febbraio 2022.

14) “veluti에 대해서 이탈리아어판(CMIS, *Gli Istituti Secolari Documenti*, VI edizione, Roma 1990)은 per così dire 즉 ‘말하자면’으로 번역한다.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깊은 부분부터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 veluti란 단어는 1983교회법전 713조에서 사라지면서 좀 더 명확하게 in saeculo et ex saeculo로 표현된다”(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

변화시켜나가는 존재이다. “이들에게는 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 즉 재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재속성에 이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 [...] 이들의 모든 삶은 사도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 그리고 이 재속회의 사도직은 세상 안에서만 충실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세상 속으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서약이나 활동, 형태나 장소 그리고 환경이 재속적 조건에 맞아야 한다.”¹⁵⁾

라짜띠(G. Lazzati)는 특히 “ex saeculo” 부분에서 재속회가 수도회와 다르다고 본다. “이 면에서 재속회원들은 세상을 그 안에서부터 재배치하면서 즉,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고유한 형태인 전문직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완전히 따르면서 개인적인 성화의 결실을 맺으려 한다. 이 면에서 재속성이 재속회의 고유한 의미이며, 동시에 수도자로서의 완덕 신분과 재속회원으로서의 완덕 신분이 완전히 구별되는 요소이다.”¹⁶⁾

이들의 존재 이유가 세상에 있는 “재속성”에 있음이 천명되면서, 재속성과 봉헌 그리고 사도직이 이 재속 성소를 통해서 조화¹⁷⁾를 이룰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그렇기에 이 성소는 이전의 수도 성소와는 다르며, 특별하고, 거룩하며,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고유한 성소이다.¹⁸⁾

재속성과 봉헌을 통합하면서 이와 결부된 재속회원의 사도직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부터 세상을 성

국 재속회], 각주 26). 또 라틴어 ex saeculo를 이탈리아어판에서는 con i mezzi del mondo로 번역한다. 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도구로 삼아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ex 즉 ‘(세상의) 깊은 곳에서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담을 수 있을 것이다.

15) PF 5-6번.

16) G. LAZZATI, “«Secolarità» e «Istituti Secolari»”, in *Secolarità e vita consacrata*, Milano 1966, 60.

17) Cf. A. OBERTI, “La vocazione de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in *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d'oggi*, Roma 1979, 172.

18) PF, 2번; 10번.

화시키며 주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세상 것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PME에서 수도회의 연장선에서 보충하는 사도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PF에서의 사도직은 고유하며, 재속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도직이다.

4. 까스텔누오보 폴리아니 회의

1954년에 까스텔누오보 폴리아니에서 32개 회의 책임자들이 모였는데(II Convegno di Castelnuovo Fogliani), 특히 재속 성소의 특성, 수도회와 다른 점, 제3회와의 차이 등이 논의되었다. 재속성이 강조되고, 지원자의 성소를 식별할 때 세상 일에 대한 관심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회원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한 마음이었다. 아직 수도회와 비슷한 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PME의 선에서 수도회와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5. 완덕신분에 대한 전체 정기회의

“완덕신분에 대한 전체 정기회의”(II Congresso Generale degli Stati di Perfezione) 참가자들은 재속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재속성에 따라 재속회들에 두 개의 형태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며 마치 자기 집에 거주하는 수도자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정치나 군대, 사회생활을 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협동하는 회들”(gli Istituti di collaborazione)과 “침투하는 회들”(gli Istituti di penetrazione)의 두 형태가 표현된다. 이 둘은 누가 위라고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형태를 압박하거나 압박을 당해서도 안된다. 이 두 형태는 한참 시간이 흐른 1988년에도 나타나며¹⁹⁾ 지금도 이어지고

19) “Today Secular Institutes fall into two categories: institutes of penetration in secular fields, on the frontiers of secular life, and institutes of collaboration in the works of the apostolate” (B. M. OTTINGER, A. S. FISCHER, *Secular institutes in the 1983 code. A new vocation in the*

있다.

결국 두 개의 문서에 각각 근거를 두고 인가받은 여러 회가 마치 평행선처럼, 재속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사도직의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후 다양성(pluralismo)이란 이름으로 계속 이어진다.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²⁰⁾

성 요한 23세 교황이 1959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하면서, 처음에는 공의회가 기존 사도의 틀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하였다.

공의회는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였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교회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지 고민하였다. 또한 세상 것에 대하여 가치를 높이 매기지 않던 교회가,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그동안 발전된 평신도 신학 사상이 공의회 안에 녹아 들어갔다. 평신도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고, 그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깨달으면서, 성직자 중심이었던 교회관에 변화가 생겼다.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평신도 사도직이 요청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침병으로서의 재속회의 역할과 영향이 있었다. 특히 세상 것을 다루고 그것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평신도의 사명이 강조된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

Church, Maryland 1988, 4).

20) “재속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PC 11항이 중요한 언급이지만, 이 이외에도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과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Ad Gentes) 40항에서도 재속회에 관계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언급을 볼 수 있다.”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27.

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여지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²¹⁾

공의회 기간 중 재속회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며 또한 한계도 보여주게 된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는 재속회에 대해서 따로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PME의 구조 아래에서 재속회를 수도회 가운데 하나로 보았기에 가능하였다.²²⁾ 하지만, 수도 생활의 쇄신에 대하여 다룬 ‘수도 생활 교령’에서는 수도 생활 가운데에서 재속회를 다루는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면서도 재속회의 재속성을 강조한다. “재속회는 수도 단체가 아니지만 교회의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복음적 권고의 진정하고 완전한 서원²³⁾을 이행한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남녀 평신도와 성직자는 이

21) LG 31항 b. 번역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22)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30.

23) 공의회 문헌은 “consiliorum evangelicorum professionem (professione dei consilii evangelici)”를 말한다. 여기서 professionem을 예전에는 허원(1항), 서약(2,11~14)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지만, 주교회의가 지금은 “서원”으로 표현한다. 공의회 자체는 구분하지 않았기에 새로된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수도회와 재속회에 같이 사용된 복음적 권고의 서약은 83년 법전에 가서는 새롭게 잘 구분된다. 573조에서는 공통적으로 복음적 권고의 선서(professione)로 말하고, 598조에서 각 회마다 복음적 권고를 준수할 양식을 회헌에 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 양식이 다양하다. 수도회는 수도 선서(654조 이하)로서 공적 서원(607조)을 선언하도록 한다. 재속회

서원으로 성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기를 온전히 봉헌하도록 특별히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재속회 자체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므로, 그 사도직을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재속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²⁴⁾ 이 교령을 만들 때, 처음부터 교령의 제목²⁵⁾이 여러 번 바뀌고 특히 완덕과 수도자의 개념이 사용되면서 “재속회가 이 교령의 대상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결국 수도 생활의 쇄신으로 정리되었지만, 교령이 결정되기 며칠 전에 가까스로 재속회가 ‘수도회가 아니지만’(quamvis non sint instituta religiosa)이라는 다섯 단어가 들어가면서 재속회가 수도회와 구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²⁶⁾

공의회에서 재속회의 사도직은 아직 수도회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사도직을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행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²⁷⁾

는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유대를 회헌이 정하도록 한다(712조).

24) PC 11항. 번역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여기서 ‘servent ut apostolatum in saeculo ac veluti ex saeculo,’(Enchiridion Vaticanum 1, 398) 문장을 per essere in grado di compiere efficacemente e dovunque ‘nella vita secolare e come se appartenessero alla vita secolare quell’apostolato’로 EV은 번역하였고, 이를 바오로딸회에서는 per essere in grado di esercitare efficacemente e dovunque ‘il loro specifico apostolato nella vita secolare e come dal seno della vita secolare’(I 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I, Figlie di S. Paolo, Torino 1987)로 번역하였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사도직을 세속 안에서 마치 세속에 속한 자와 같이 이행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번역하였다가 다시 “세상에서 또 세상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므로”로 하였다. 이 새로운 번역은 “in saeculo ac veluti ex saeculo”라는 개념이 잘 나타나지 않기에, 오히려 예전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35.

25) 교령 초안의 제목은 이렇게 변화하였다. Constitutio de Statibus perfectionis adquirendae (A, B) → Schema propositionum de Religiosis (C) → De accomodata renovatione vitae religiosae (D, E, F).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33.

26) Cf. A. OBERTI, *La Secolarità consacrata nel Magistero pontificio*, VC, 29(1993) 458;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34.

27) 위 각주 24의 ‘servent ut apostolatum in saeculo ac veluti ex saeculo,’의 필자 번역본.

으로 표현하여 재속성 안에서 사도직이 수행됨이 표현되었다. 또한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사도직이 재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나중에 법전에서 평신도만이 아니라, 재속회의 사도직도 그 근거를 둘 수 있게 되었다.

7. 제1회 재속회 국제회의 — 합법적인 다양성(*legittimo pluralismo*)²⁸⁾

1970년에 93개 재속회의 회원 430명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국제 회의(Congresso Internazionale degli Istituti Secolari)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신학적인 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재속회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크게 보면, “재속성”의 해석에 따라 온전한 재속성(*piena secolarità*)을 지향하는 회와 협력하는(*collaborazione*) 사도직을 하는 회로 구분할 수 있다.

협력하는 사도직을 하는 회들은 재속성을 내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생활이나 공동활동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온전한 재속성을 추구하는 회들은 재속성을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회원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회 자체가 하는 고유한 활동도 없으며, 회원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놓고 토론한 후, 회의 참석자들은 재속회의 ‘합법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투표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문헌이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다양성’의 원칙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각자가 자신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재속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71~1972년 사이에 사도직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²⁹⁾이 있었는데, 이때 올바른 다양성(*giusto*

28) 이 부분은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154쪽.

29) 이 논쟁은 한쪽에는 Gutiérrez가 있고 반대편에는 Lazzati와 Beyer가 있다. 후자는 결국 올바른 다양성(*giusto pluralismo*)을 말하면서, 온전한 재속성에 따른 사도

pluralismo)에 대한 개념이 거론된다.

8. 성 바오로 6세 교황 — 올바른 다양성(*giusto pluralismo*)

재속회를 잘 이해하던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다양한 단체면담(udienza) 기회에 재속회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한다. “새로운 점은 이것이다. 재속회원 여러분은 세상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형태의 삶에, 이 세상 삶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는 수도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재속회라고 불린다.”³⁰⁾ 즉, 재속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살고, 그 삶의 형태는 수도회와는 달리 보통 사람과 같다.

봉헌과 재속성에 대해서 “공동본질”(coesenziali)이라고 하면서, 이 둘이 다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재속성은 단순히 사회적인 조건만이 아니다. 세상을 성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세상에 봉사하는 신학적인 현실(realtà teologica)³¹⁾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소(il laboratorio sperimentale)”³²⁾ 즉 실험실이다.

이러한 개념 위에서 재속회원과 재속회의 사도직과 다양성에 대해 볼 수 있다. 다양성은 다양한 삶의 형태나 공동체를 탄생시킨다.³³⁾ 하지만 이러한 재속회의 다양성은 오케스트라가 공동의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듯이 공동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³⁴⁾ 이 점에서 바

적을 주장한다.

30) PAULUS VI, alloc., *Siate i benvenuti*, 26 sep. 1970, AAS, 62(1970), 619-625. 9번.

31) PAULUS VI, alloc., *Ancora una volta*, 2 feb. 1972, AAS, 64(1972), 615-620. 13번.

32) PAULUS VI, alloc., *Ben volentieri*, 25 ago. 1976, Insegnamenti di Paolo VI, 14(1976), 675-678. 4번 항목.

33) PAULUS VI, alloc., *In questo giorno*, 20 feb. 1972, AAS, 64(1972), 206-212. 14번.

34) 바오로 6세가 ‘올바른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다양함은 인정하지만 교회법과 어긋나고 봉헌된 재속성의 전망과 다른 것이라면 합당하지 않기에 재속회가 아니며, 수도회만이 아니라 재속회 전체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베이에는 주장한다. J. BEYER, “La secolarità degli istituti secolari”, in *Spiritualità degli Istituti Secolari*, Milano 1973, 80.”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

으로 6세는 올바른 다양성(*giusto pluralismo*)³⁵⁾을 강조한다. 온전한 재속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사도직만이 아니라, 올바른 다양성 안에서 공동활동 형태의 사도직도 인정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개별적이거나 연합하거나, 숨어있거나 공개되었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점을 다양성이란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회 자체가 아니라 회원 각자가 실험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회는 선택한 전문직을 잘 수행하도록 회원들을 성숙하게 양성할 책임이 있다. 전문직 수행이 이들의 사도직이다.³⁶⁾

9. 1983년 새 교회법전

이전 법전에 없었던 재속회에 관한 규정들이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전에 삽입되었다. 재속회에만 고유한 규정은 710~730조이지만, 573~606조의 봉헌생활회에 관한 공통규정이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교회법전이 재속회에 대한 조항들을 재정비하였기에 PME를 비롯한 이전에 나왔던 모든 규정은 폐지되었다.”³⁷⁾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 법전이 제시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9.1. 봉헌생활회 전체를 규정하는 명칭

재속회의 등장으로 수도 생활이나 수도회란 개념만으로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새 교회법전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투표를 한 결과 “복음적 권고를 통한 봉헌생활”(De vita consecrata per consilia evangelica)³⁸⁾ 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반포된

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각주 48.

35) 이 개념은 위에서 말한 70년의 회의 이후에 나온 논쟁에서 언급된 것이다.

36) 교황은 회와 회원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후, 원고에는 없던 다음의 말을 추가한다. “또한 기술자, 교수, 심리학자, 직원 등 여러분의 전문직은 존용하지만 실행되는 사도직이 될 수 있다” (PAULUS VI, alloc., *Ben volentieri*, 5번).

37) 김길민, *L'identità degli Istituti Secolari*, 136~137.

38) 사실 현 법전의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이라는 제목은 애매한 면이 있다. 회를 다루지만 실제로는 단체 생활을 하지 않는 개인인 은수자(603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봉헌생활의 형식에는 동정녀들의 회도 낀다고 하여(604조) 이들은 봉헌생활회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봉헌생활회”가 명칭이지

법전은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생활회”로 명칭을 정하였다. 봉헌생활회라는 공통의 제목 아래, 수도회와 재속회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들, 수도회만의 것, 재속회만을 위한 고유한 조항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도직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고유한 부분이 구별되어야 한다.

9.2. 재속회의 개념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생활회이다.³⁹⁾ 따라서 이들의 사도직은 세상을 성화하는 것으로서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9.3. 회원들의 법적인 신분

공통규범에서 이들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며(588조), 교회의 삶과 성덕에 속하고, 이들이 새로운 신분이라는 점을 규정한다(574조). 그러면서 711조에서는 재속회원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 않기에 곧 입회 후에도 성직자는 성직자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남는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이들의 신분이 재속성 및 사도직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9.4. 수도회와의 공통 사도직

577조에 따르면 봉헌생활회가 다양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속회는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회이다.

만, 573조에서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생활은”이라는 말로 봉헌생활이란 말이 약칭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담당했던 법전 준비위원회에서는 회보다 는 봉헌생활 자체나 사람을 주로 표현하고 싶어했다. [a] «*De profitentibus consilia evangelica*» (1표); b) «*De vita consecrata per consilia evangelica*» (8표); c)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consilia evangelica*» (4표).] 이 점을 고려하면,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생활 (약칭: 봉헌생활)로 제목을 정했다라면 개념이 더욱 명확했을 것이다. 39) 제710조.

9.5. 수도회의 고유한 사도직

법전은 673~683조에서 수도회의 고유한 사도직에 대해 다룬다. 수도회들을 처음에는 관상수도회와 활동 수도회로 구분하였지만, 차츰 이 구분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도직의 카리스마가 다양해지고, 더 나아가서 사도직은 관상수도회를 비롯하여 모든 수도회가 공통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 성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축성 생활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수도자의 사도직인데, 그것은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함양된다.⁴⁰⁾

이 사도직은 온전히 명상을 지향하는 회⁴¹⁾와 사도직 사업에 헌신하는 회의 성격에 따라 고유한 점이 있다. 특히 사도직 사업에 헌신하는 회에서는 사도적 활동이 그들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⁴²⁾

이러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도회에 공통적인 규정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 607조에 따르면 수도회의 사도직은 공(개)적 서원을 했다는 점과 공동생활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분리(separatio a mundo)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또한 6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9.6. 재속회의 고유한 사도직⁴³⁾

재속회원의 삶은 온전히 사도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봉헌을 사도적 활동으로 드러내고 실행해야 한다. 사도직은 속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도록 힘써야 하는데, 성직자와 평신도 회원의 상황에 따라 구별된다.

평신도 회원은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⁴⁴⁾ 교회의 복음화

40) 제673조.

41) 제674조.

42) 제675조.

43) 제713조.

44) 이 조항은 “in saeculo et ex saeculo”로 표현하면서 예전부터 함께 있던 “veluti”를

임무에 참여한다. 이러한 일은 신자 생활, 자신의 봉헌, 현세 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자신의 재속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봉사에도 협력한다.

성직자 회원은 봉헌생활을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동료들을 지원하고,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사제 직무를 통하여 세상을 성화시킨다.

9.7. 삶의 형식⁴⁵⁾

재속회원은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속으로부터의 분리’가 수반되는 수도회와 달리 공동생활⁴⁶⁾을 하지 않고 자신을 봉헌한다는 어떠한 외적 표시도 하지 않는다. 법전에서 인정하는 삶의 방식은 세 가지이다. 혼자서 또는 자기 가정에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로, 회헌에 규정되어 있다면 형제적 생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방식은 PME와 같은 맥락이며, 더 나아가서 재속회의 정체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될 수 있지만, 언제나 수도회의 공동생활과는 달라야 하며,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⁴⁷⁾

삭제한다. *veluti*는 “어떤 의미에서는 (*in certo senso*)”라는 내용으로 이들이 마치 그 세상에 있거나 마치 세상 속에서부터 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진정한 참여가 아니라 피상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속 회원들은 바로 세상에서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부터 복음화 임무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며 중요한 변화이다. Cf. M. ALBERTINI, *Gli istituti secolari e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n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APO, (1983) 564.

45) 제714조.

46) 공동 생활(*vita comune*)과 공동체(*comunità*) 혹은 공동체 생활(*vita comunitaria*)은 구분해야 할 개념이다. 재속회도 하나의 공동체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 집에서 한 장소의 지휘 아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47)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467-468.

PME에서는 공동의 집이 의무였고, 이 집이 없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하지만, 점차 선택 사항이 되었고, 법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공동의 집이 있을 수 있지만, 수도회의 공동생활처럼 보이면 안된다. 베이에는 공동으로 사는 것은 온전한 재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염려한다.⁴⁸⁾

9.8. 개인적 사도직과 회 공통의 사도직 비교

법 규범 자체에서는 이들의 사도직이 온전히 개인적이어야 한다거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재속회의 다양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718조에서는 “회를 위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공동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 조항은 회의 재산 관리에 관계된 규정을 하면서, 특히 회를 위한 일을 하는 회원들에 대한 회의 재정적 의무를 규정한다. “*sodales, qui pro ipso operam impendunt*”라는 문장에서 한국 법전은 *operam*을 사업으로 번역했다. 각 회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교회의 재산법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청빈 정신도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회에서 책임을 맡거나 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는 회원들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받지 못할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인 책임을 회가 지도록 규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동의 사업이 아니라, 회장이나 사무총장처럼 “회 (자체)를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9. 평신도 사도직과의 관계

83년 법전은 평신도에 대해 17년 법전에 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그 가운데 225조는 세상에서 평신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잘 설명한다. 평신도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48) Idem., 468.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는 표현은 평신도 재속회원들이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도록 돕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9.10. 법전에 대한 평가

재속회를 수도회와 같은 위치로 놓으면서, 봉헌생활회로서의 공통점과 수도회와 다른 재속회만의 고유한 규정들을 따로 다룬 것이 법전의 가장 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도직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재속성과 봉헌이라는 관점에서 사도직을 정의하고, 성직자 회원의 사도직과 평신도 회원의 사도직을 구분하였다. 온전한 재속성을 지향하는 회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입장에서 공동의 집이나 공동 사업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10. ‘수도회와 재속회 성’ 전체 회의 — 수도회와 다름

1983년에 교황청 ‘수도회와 재속회 성’(1988년에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으로 바뀜)의 전체 회의에서 “재속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Gli Istituti Secolari: loro identità e loro missione)이란 제목으로 재속회가 다루어졌다.⁴⁹⁾

재속 성소는 수도 성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소이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부터 이들의 성소를 이해해야 한다.⁵⁰⁾ 봉헌생활과 수도생활이 같지 않기에 온전히 수도회에 관한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평신도 재속회원은 모든 점에서 평신도이다. 특히 스페인에서, 재속회들이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극단적으로 어떤

49) 이 회의 이후에 관할성에서 재속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서를 주교회의들에게 보냈다. 여기서는 CMIS가 이 문서를 편집한 책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CMIS, *Gli Istituti Secolari*, Roma 1984.

50) Cf. CMIS, *Gli Istituti Secolari*, 61.

회들은 수도회와 닮아가고 또 다른 회들은 평신도 단체와 닮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모습임을 인정하였다.⁵¹⁾ 더 나아가 이 문서는 역사 속에서 특히 PME부터 바티칸 공의회 사이에 ‘침투하는 회’와 ‘협동하는 회’, 그리고 이들이 ‘섞인 회’들이 나타난 점을 인정한다.⁵²⁾

11.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건강한 다양성(*sano pluralismo*)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황은 여러 기회에 재속회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재속회는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소” 즉 실험실이라는 바오로 6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다. “재속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았다. 이 회들은 공의회가 확인한 교회론을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교회론은 특히 교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거룩함으로 불리웠다는 점과, 세례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갖게 되는 의무, 교회가 세상 안에서 효모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구원의 보편성사로 존재하는 것, 다양한 성소가 여러 모습을 갖고 존중받는다든 것 등을 말한다.”⁵³⁾ 따라서 재속회는 교회가 하느님과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⁵⁴⁾

이들에게서 봉헌과 재속성, 사도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같은 형식의 삶을 산다.⁵⁵⁾ 세상 안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 재속회원에게 다양한 사도직 목적에 따라서 인간 세상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풍부한 다양성은 재속회를 양육시키는 다양한 영성으

51) Cf. Idem., 72.

52) Cf. Idem., 19.

53) Giovanni Paolo II, *Vi ringrazio*, 6 maggio 1983. No.1.

54) Idem., 2.

55) Ibidem.

로 표현된다. 이 영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룩한 유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할 가능성 안에서 그 성격이 정해진다.⁵⁶⁾ 따라서 재속회원의 삶의 경험은 사목자와의 올바른 친교 속에서 ‘건강한 다양성’(sano pluralismo)를 통하여 이루어진다.⁵⁷⁾ 평신도 재속회원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또한 평신도라는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봉헌을 통하여 원래의 재속적 조건이 더 강화된다.

따라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의 실험실인 재속회원의 사도직은 재속성과 봉헌이라는 전제 아래, 세상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다양성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베네딕토 16세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담화와 교황을 대리한 장관들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⁵⁸⁾

12.1. 새로운 봉헌 형식

재속회는 새로운 봉헌 형식이다. PME를 통하여 이루어진 법적인 행위는, 봉헌의 새로운 형식으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도착점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재속회의 성소를 생각하면, 60년 전의 문서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봉헌 형식에 복음 정신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조건이나 사목 직무 안에 잠겨서 재속성을 살도록 불린 평신도들과 교구 사제들이 있다.

56) Idem., 3.

57) Giovanni Paolo II, *A vous*, 28 agosto 1980, No.2.

58) BENEDETTO XVI, *La Chiesa ha bisogno di voi per compiere la sua missione, Discorso al partecipanti alla CMIS sul 60° anniversario di PME*, 3 feb. 2007. 이외에 Card. Tarcisio, *La secolarità parla alla consacrazione*, 18 luglio 2012; Card. Braz de Aviz, *Gli Istituti Secolari e la comunione ecclesiale*, 23-28, luglio 2012 참조.

12.2. 역사 속에서 육화의 신비를 살아가는 재속회

이들은 신학적으로 “육화의 신비”를 통하여 인간 세상에 삽입된다. 재속회원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생활하는 모든 고유하고 특별한 일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노동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성부의 뜻을 이루는 육화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다.

12.3. 재속 봉헌의 특징은 교회와 세상이 대화하는 실험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씀처럼, 재속회는 “교회와 세상이 대화하는 실험실”이다. 이것은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직업 활동, 사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조에서 짜낼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속 봉헌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보통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다른 편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 즉 재속회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복음의 빛으로 판단하도록 불린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은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들이 완전히 섞여 들어간 바로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재속회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재속회원이 수행하는 사명의 중요한 측면을 말한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신으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는 사명이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상호교환적 이어서 교회가 세상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주기도 한다는 점을 공의회는 기억한다.⁵⁹⁾

12.4. 효모처럼 모든 곳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도직⁶⁰⁾

교황은 재속회가 삶이나 사도직, 사회 참여를 특별한 형태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예언자적 사명을 풍부하게 실천하게 해주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요구한다.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효

59) Cf. Card. Braz de Aviz, *Gli Istituti Secolari e la comunione ecclesiale*.

60) Cf. BENEDETTO XVI, *La Chiesa ha bisogno di voi per compiere la sua missione*.

모처럼 재속회원의 삶은 자주 침묵하고 숨겨지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재속회원의 사도직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인간적인 모든 곳이다.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만이 아니라 모든 이와 대화하면서 공동선을 찾으며 관계를 맺는 세상 공동체도 이들의 사도직의 장소이다.

12.5. 다양성의 문제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장관인 지 아비스(Joao Braz DE AVIZ) 추기경에 따르면⁶¹⁾ PME를 통하여 이 새로운 형태가 법적으로 허가 되면서, 사도직의 목적이 다르기에,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회들이 합쳐졌다. 모임을 통하여, 다양성(소위 말하는 pluralismo)이 받아들여지면서 동시에 다양성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한 가지만 보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에서부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다양성만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도전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13. 프란치스코 교황⁶²⁾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봉헌과 재속성 그리고 사도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속회원은 혁명가⁶³⁾이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

61) Cf. Card. Braz de Aviz, *Gli Istituti Secolari e la comunione ecclesiale*. 그는 2018년에 베트남 아시아재속연합회 총회에도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했다.

62) CMIS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 언급 가운데 몇 개를 인용하면서 앞의 글자들로 문서의 이름을 약칭한다(<https://www.cmis-int.org/it/documenti/magistero-della-chiesa/francesco/>). FRANCESCO, “*Svegliate il mondo!*”, Lettera Apostolica del Santo Padre Francesco a tutti i consacrati in occasione dell'Anno della Vita Consacrata 2014; FRANCESCO, *Udienz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l'incontro promosso dalla Conferenza Italiana degli Istituti Secolari*, 10 mag. 2014; FRANCESCO, *Messaggio del Santo Padre ai partecipanti al Convegno della Conferenza Italiana degli Istituti Secolari*, 23 ottobre 2017;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alla Presidente della CMIS*, 2 febbraio 2022, in occasione del 75° anniversario della PME;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in occasione dell'Udienza avuta dalla CMIS*, 25 agosto 2022.

63) E non dimenticate: siate rivoluzionari! (FRANCESCO, *Udienza del Santo Padre*.)

제를 연구하는 실험실로서 세상과 대화하는 교회의 상징⁶⁴⁾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예견하고 또 실현하는 사람이다.

13.1. 사도직의 장소는 세상

이들이 사는 곳 즉 세상은 이들의 사도직의 장소이다. 재속회원은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곳에서, 그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효모처럼 살아간다. 바로 “그곳”(li)이란 단어를 교황은 여러 번 강조한다. 그곳은 “복음의 빛으로 비추려고 질문하면서 인류의 근심과 기대를 함께 나누는 곳. 사람들이 걷는 곳, 피로와 고통이 더 심한 곳, 권리가 무시되는 곳, 전쟁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곳, 존엄성이 무시되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느님께서 구원 사업의 선물을 계속 주시는 곳이다. 매일 사랑의 몸짓으로 하느님의 선하심과 부드러움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있도록 불렸다.”⁶⁵⁾

재속회는 사회 구조 속에 모세혈관처럼 존재한다.⁶⁶⁾ 단순히 각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곳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 세상에 필요한 많은 조직체계의 구원에 관계된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만이 아니라 구조를 구원하기에 재속 성소는 매력적⁶⁷⁾이다.

이렇게 봉헌된 재속성은, 매일 세상의 거리 위에서 나타나는데, 회원의 전문직 수행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복음적인 권위”가 부여된다.⁶⁸⁾

재속회는 처음부터 세상에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의방에서 나오는 것을 선택했고, 이제 다시 제의방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⁶⁹⁾ 즉 교회 내부의 활동으로 돌아가서는 안되며, 세상에서 증거

64) 여러분은 바티칸 공의회를 “예고한” 예언직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은 세상에 접근한 교회의 날개입니다. 교회의 걸음을 앞당기는 성령.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바오로6세의 1972년 담화를 인용한다.)

65)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66) FRANCESCO, “*Svegliate il mondo!*”.

67) FRANCESCO, *Udienza del Santo*.

68)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69) Idem.

의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13.2. 그 안에 있는 것(stare dentro): 신학적 현실 — 세상과 대화

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은 단지 “세상 안에 있는” 사회적 조건만이 아니라 신학적 현실, 신학적 조건⁷⁰⁾이 된다. 이 신학적 조건은 형제의 살을 알고, 보고, 듣고, 공감하고, 만질 줄 알도록 의식하고, 조심하도록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필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재속회원은 하느님과 현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스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속회원의 자리는 바로 신학적인 현실로 “그 안에 있는 것”(stare dentro)이다.

13.3. 복음 정신으로 메시지 전달

재속회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자신 안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마음(심장)으로, 세상의 심장 안에 있어야 한다. 회원은 복음 정신으로 (세상을) 그 안에서부터 바꾸는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소금과 효모로서 있다. 세상을 위하여 봉헌된 재속회원은 “세상이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⁷¹⁾ 세상에 존재한다. 교회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안테나⁷²⁾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3.4. 씨앗이나 효모로서 숨겨진 존재

회원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세상에서 증언한다. 이 증언을 하는

70) FRANCESCO, *Udienza del Santo*; 8 FRANCESCO, *Messaggio del Santo Padre*.

71)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72) Idem.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성령계로부터 알아내도록, 각 재속회의 특별한 카리스마가 근본적이고 동시에 자유로우면서 창조적하도록 회원들을 부른다. 즉, 이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하는 모습은 재속회마다 카리스마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씨앗과 효모로 존재한다. 익명이 아니라, 땅속의 씨앗이나 빵 속의 효모처럼, 이들은 세상 안에 숨겨진 존재⁷³⁾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회로로 존재하지만, 결코 제도화되어서는 안된다.⁷⁴⁾ 즉, 회와 같은 형태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개별적인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13.5.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직 정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재속회원의 사도직은 무엇보다 세상 안에 숨겨진 존재로서,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는 실행체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화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채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⁷⁵⁾ 또한 교황은 재속회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는 안되며, 봉헌 때문에 재속회가 수도회와 가까워지려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수도 생활과 혼동하면 안된다⁷⁶⁾고 말한다. 또한 세속적인 것(*mondanità*)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신도 회원들을 위해 거룩한 평신도성⁷⁷⁾을 말한다.

73) Idem., 참조.

74) Idem., “Siete istituti, ma non istituzionalizzatevi mai!”

75)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참조.

76)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77) “Il termine secolarità, che non equivale pienamente a quello di laicità.”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재속회원이 되면서 교회법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속회원이 평신도”라는 명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먼저, 성직자 재속회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평신도의 범주에 어떤 의미로도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로 평신도라는 개념은 다양하다. 평신도 재속회원들은 봉헌된 사람이기에 단순한 의미의 평신도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 모든 평신도를 봉헌된 평신도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한정을 지었을 때는 완전한 평신도

종합과 나가는 말

재속회의 사도직은 근본적으로 재속성, 봉헌, 사도직의 세 요소가 하나로 맞물려 있는 재속 성소의 기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수도자나 사제가 사도직을 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의 사도직”에서 출발했으나, 회원들이 경험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재속성과 봉헌 그리고 사도직이 통합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재속회의 사도직에 대한 개념은 승인된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도권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음⁷⁸⁾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속성의 해석에 따라, “온전한 재속성(*piena secolarità*)을 지향하며 침투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침투하는 회(*istituti di penetrazione*)”와 부분적일지라도 어떠한 형태론은 “회의 고유한 사도직이 있으며 협력하는(*collaborazione*) 사도직을 수행하는 협동하는 회(*istituti di collaborazione*)”의 두 가지 형태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인다.

1. 새로운 성소인 재속회의 사도직 — 세상 안에 숨겨진 사도직

재속 성소는 새로운 성소이고, 혁명이다. 기존 수도 생활의 틀만으로는 답을 수 없기에, 공의회와 법전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생활”. 수도회와 재속회를 아우르는 이 새로운 개념 아래, 각 특성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도 성소와 비교하면서 재속회의 사도직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이지만, 봉헌이란 성격은 이들을 “거룩한 평신도성”의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다.
 78) 이 점은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에서 주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도 언급한다. “재속회의 정체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통하여 점차 명확해졌다.” CIVCSVA, *Consacrazione e secolarità*, Lettera ai Vescovi della Chiesa Cattolica sugli Istituti Secolari. giugno 2017. 또 개념의 발전은 처음에 나온 “*in saeculo, veluti ex saeculo*” 명제가 차츰 명확해지며 *veluti*를 뺀 “*in saeculo, ex saeculo*”로 바뀌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1.1. 세상과의 관계의 실험실이며 신학적 현실, 존재하며 침투하는 사도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세속 권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고유한 길을 찾는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아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부정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보았으나, 이제는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상대로 인정하면서 세상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했고, 그런 실험을 재속회가 하도록 요청하였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언급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교황들은 재속회를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소(laboratorio sperimentale)” 즉 “실험실”로 표현한다. 때로는 재속회가 공의회가 세상과 맺으려는 관계를 미리 보여주었고, 지금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먼저, 재속회원이 세상에 존재하며 “증거하는 사도직”이 실현된다. 재속회원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를 세상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재속회원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도권은 여러 번 재속회원의 존재가 “신학적 현실”임을 강조한다. 재속회원이 세상에 존재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함께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신학적 현실에 대한 점도 교도권을 통하여 점차 개념이 발전되었다.

더 나아가서 재속회원의 “침투하는 사도직”이 자리 잡게 된다. 재속회원은 교회가 세상과 마주치는 끝점에서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고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는 사도직을 수행한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주고받는다. 재속회원은 교회의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것을 교회에 알리는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들의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재속회원은 인간이 되시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화의 신비”를 살아간다.

이런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구별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형태의 삶”을 살며,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사도직이나 사회 참여는 특별한 형태보다는, 모든 것에 열려 있으면서 개인적인 삶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2.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의 가치 인정

재속 성소는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기에,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맡는 역할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수도자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과 달리, 재속회원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전문직을 수행한다. 세상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회원의 사도직이다. 복음 정신으로 자신을 흠뻑 적셔,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여야 한다.

1.3. 전문직과 구조적인 세상 성화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감각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지만, 재속회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세상을 말한다. 회원 각자의 세계가 있다. 평신도의 세계가 있고, 성직자의 세계가 있다. 이 둘은 사도직의 세계가 다르다. 교회법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은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성직자는 “교구 성직자”로서의 원래의 신분을 더 강화⁷⁹⁾해,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세계 안에 더욱 머물도록 해준다.

이들은 “증거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사제회원들은 특히 복

79) 교회법 제715조에 따르면,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다. 수도자가 자신의 회에 적을 두는 것과는 달리, 성직자 재속회원은 이렇게 자신의 교구에 입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 하지만, 2항에서는 회에 입적된 자들이 회의 고유한 사업이나 회의 통치에 지명되는 경우를 예상한다. 회에 입적되는 경우는 원래의 신분을 더 강화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음화하는 것이며, 평신도회원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⁸⁰⁾ 성직자 회원은 특히 사제단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 안에서 자신이 하는 성무 집행을 통하여 세상을 성화시킨다. 평신도 회원은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각자가 하는 전문직이나 직업을 통하여 세상을 성화한다. 전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사도직이다. 특히 세상에서의 전문직은 평신도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만이 그 세계를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게다가 평신도 회원의 노력과 모범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⁸¹⁾.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일깨워주고 함께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사도직은 또한 자신의 생활이나, 일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에도 관계된다. 사회 구조를 하느님의 뜻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기에 이들은 매력적이다. 세상에는 어두움도 가득하기에, 회원은 부정적 의미인 세속(*mondanità*)과 싸워,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노력한다.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싸운다. 그동안 많은 회원이 노동조합이나 교육계 등지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었다.

1.4. 씨앗이고 효모의 사도직

재속회의 사도직은 빛보다는 소금이고 씨앗이며 효모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수도자들이 수도복을 입고, 수도자로 알려져 있기에 잘 드러난다. 빛이 어두운 곳에서 주위를 비추듯 수도자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를 밝게 한다.

하지만, 재속회원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다만, 복음으로 무장된 회원의 전문적인 실력이 세상 안에 스며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변화를 이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며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빵을 부풀리는 소금이나 효모와 같다. 재속회원이기에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 겸손되이 자신

80) FRANCESCO, *Messaggio del Santo Padre*.

81) 바오로 6세는 재속회원의 영적인 체험이 평신도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Cf. PAULUS VI, *Ben volentieri*, 7번.

을 비우는 존재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세상에서 증언하는 재속 회원은 익명으로 가치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의 씨앗이나 빵 속의 효모처럼, “세상 안에 숨겨진 존재”⁸²⁾이다.

1.5. 회와 회원의 역할

회원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회들은 회 자체가 부분적으로라도 사도직을 수행하기도 한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재속회 자체가 이 임무를 맡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회원들 각자의 일이다. 따라서 회 자체의 의무는 회원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열려있도록 양성하는 것”⁸³⁾이라고 말한다. 또 베네딕토 교황은 사도직을 특별한 형태로 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만⁸⁴⁾ 요구한다. 이렇게 교도권은 재속회원의 사도직이 특별한 형태이거나 회 자체의 공동사도직보다는, 회원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기대한다. 또한 회 자체는 회원들이 이러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잘 양성하고 지지해야 한다.

2. 수도회로의 회귀 위험

새로운 성소인 재속 성소는 수도 성소와 다르다. 복음적 권고를 따르는 방법도 다르며, 사도직 수행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수도자는 수도복과 수도회의 도움을 받기에,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때로는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수도자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한다. 하지만, 재속회원에게는 이러한 보호가 없다. 따라서 복음적 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전문적인 세상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밑바닥에서부터 이 분야를 잘 알고 또 아끼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

82)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참조.

83) PAULUS VI, *Ben volentieri*, 5번.

84) Cf. BENEDETTO XVI, *La Chiesa ha bisogno di voi per compiere la sua missione*.

다. 재속회원이기에는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없다. 오히려 복음대로 증거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복음도, 전문직도 자신의 실력으로만 증명해야 하기에, 재속회원은 교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속회가 수도회를 닮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유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먼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다. 수도복까지는 아니어도 메달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표지를 하고 싶은 유혹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봉헌된 사람으로 알려지거나,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본당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전례나 본당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다른 신자도 누구나 하는 활동이라면 좋지만, 자신이 봉헌된 사람으로서 알려지고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떨쳐내야 할 유혹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는 “자신의 재속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⁸⁵⁾ 게다가 이미 수도복을 벗어버리고 보통 사람처럼 평상복을 입는 수도회도 있다. 재속회가 이들 수도회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야 한다.

또 공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강화시키고, 공동체가 자신을 더 잘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속회는 공동체를 이루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속회원은 보통 사람 가운데 한 명이어야 하기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세상 안에 침투된, 숨겨진 사람이 되려면 공동생활이라는 특별한 방식은 맞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회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미 수도회 가운데에도 사도직의 필요성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⁸⁶⁾도 많다.

85) 교회법 제713조 2항.

86) 특히 한국 교회에서 본당 사목에 참여하는 수도자들의 경우, 공동생활 여부가 의문이다.

이 점에서 2019년 3월 19일 자의 교서 *Communis vita*를 통하여 교회법전 조항을 변경하면서 수도회와 재속회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⁸⁷⁾ “공동생활”은 수도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수도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수도원에 거주해야 하며, 장상의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수도원에서 이탈하면 안된다. 그런데 근래에 이와는 달리 수도자들이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수도원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조항만으로는 장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교회법전 제694조에 새롭게 3항을 첨가하였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는 그 사실 자체로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속회원에게는 공동생활이 본질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속회원의 제명을 규정하는 729조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의 사도직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경우도 있고, 또 사도직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세상에서 재속 성소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회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 수도자들은 회로부터 맡겨진 소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속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전문직을 선택하고 그 전문직이 바로 그 회원만의 고유한 세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조합이나 연맹 등의 방법도 있지만,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이라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열려있다면 그 안에서 신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3. 다양성의 문제(pluralismo)

76년 동안 재속회 내에 재속성의 이해와 사도직의 차이로 서로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 교도권이 점차 발전

87)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19 marzo 2019.

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 다양성 개념의 발전: 합법적인 → 올바른 → 건강한 다양성

그동안 책임자들이 모여 재속회 사이에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먼저 “합법적인 다양성”이 인정되었다. 교회의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재속회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실제로, PME의 규정에 따라서 많은 재속회가 인가받았다. 그런데, 1년 후에 발표된 PF는 다른 색을 띠며 법적인 인가보다는 회원들의 현실 삶을 더 많이 반영하였다. 이런 두 가지 흐름 모두 교회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합법적인 다양성의 개념이 성립된다.

다양성의 개념을 교도권이 더 발전시킨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올바른 다양성”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좀 더 강한 성격을 지닌 재속회원이나 학자가 먼저 주장하던 것이다. “올바른”에 반대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법에서 허용하는 모습보다는, 재속 성소 자체가 지향하는 바를 더욱 깊이 살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건강한 다양성”을 말한다. 이를 반대로 표현하면 건강하지 않거나 아픈 다양성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모습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도직 목적에 따라 인간 세상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의 모든 분야가 사도직의 영역이기에, 사도직은 세상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다양성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풍부한 다양성은 다양한 영성으로도 표현되는데, 이 영성은 거룩한 유대를 지키는 다양한 방식만이 아니라,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모습에서 그 성격이 정해진다.⁸⁸⁾ 재속회원의 삶은 ‘건강한 다양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속회원이 숨겨진 존재라거나, 수도회와 가

88) Giovanni Paolo II, *A vous*.

까워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등 재속회의 기준에 대하여 언급할 때, “어떤 회는” 이라거나 “어떤 회원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공통의 기준안에서 다양성이 이야기되는 것이지, 이 기준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2. 다양성은 회의 카리스마 차이

회원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세상에 숨겨진 존재로 증언한다. 이 증언을 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성령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각 재속회의 특별한 카리스마가 회원들에게 근본적이고 동시에 자유로우면서 창조적하도록 요청한다. 즉, 이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하는 모습은 재속회마다 카리스마가 다르기 때문이다.

3.3. 침투하는 회와 공동사업회의 갈림길

현재 크게 범주화할 수 있는 침투하는 회와 공동사업회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 특히 교도권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온전한 재속성을 살아가는 것을 기초로 한 침투하는 회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공동사업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베네딕토 교황의 말처럼 PME는 도착점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모습만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본질적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① 범주를 바꿈

오푸스 데이(Opus Dei)처럼 교회 규정 안에서 새로운 범주를 만들거나, 기존의 다른 범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스페인 신부 에스크리바(Jose Maria Escriva)가 1928년에 시작한 오푸스 데이는 1947년 2월 2일에 PME가 반포되고 며칠 후 2월 24일에 교황청으로부터 성칭 설립 재속회(在俗會)로 인가(decretum laudis)되어, 1950년 6월 16일 교황청의 확정 승인(approvazione definitiva)을 받

았다. 그러나 1982년에 교황청의 유일한 성직 자치단으로 인정받았고,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전에 “성직자치단” 항목이 새로 생겼다.⁸⁹⁾

재속회로 인가된 최초의 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푸스 데이는 자신들이 재속회의 범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자, 자신들의 성격에 어울리는 법적 범주인 성직자치단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자신들의 본성에 맞는 법적인 범주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성직자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혹은 평신도 단체 등의 여러 선택지가 있다.

② 지향점을 바라보며, 필요한 만큼 현실에 적응

자신들이 재속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범주로 옮기기 보다, 건강한 다양성의 기준안에서 변화⁹⁰⁾할 수 있다. 재속성과 봉헌, 사도직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면서, 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한적이고 과도기적으로 협동하는 모습⁹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로 있을 때, 진정한 재속 성소가 구현되고, 올바른 사도직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대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활동이 봉헌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빠르게 변화하며 하느님보

89) Giovanni Paolo II, cost. ap. *Ut sit validum*, 28 novembre 1982, in AAS 75(1983) I, 423-425; SCE, dich. *Praelaturae personales*, 23 agosto 1982, in AAS 75(1983) I, 464-468. Cf.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I, 388; Agostino Favale(cura). *Movimenti ecclesiali contemporanei*, 104.

90) 그 예로 『이성과 신앙』 잡지에 소개한 성모카테키스타회가 성마리아재속회로 바뀐 경우와, 아시아에서 재속회로 설립된 회가 수도회와 재속회로 분리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참조: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173-178.

91) 회나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온전한 재속 성소를 살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다. 이런 곳에서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온전한 재속성을 지향해야 한다.

다는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더 찾는 경향이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려는 봉헌생활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는 정신처럼,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실험실로서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깊은 곳에서부터 증거하는 새로운 성소인 재속회의 사도직이 역사 속에서 좀 더 명확해졌다. 이들이 “건강한 다양성”의 원칙 아래 열린 눈으로 혁명가로서의 정체성을 더 잘 발견하며, 고유한 사도직을 통하여 세상을 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교황 문헌 (Cf. CMIS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cmis-int.org/it/documenti/magistero-della-chiesa/>)

- PIUS XII, const. ap., Provida Mater Ecclesia, 2 feb. 1947, AAS, 39(1947), 114-124.
 PIUS XII, motu pro., Primo feliciter, 12 mar. 1948, AAS, 40(1948), 283-286.
 PAULUS VI, alloc., Siate i benvenuti, 26 sep. 1970, AAS, 62(1970), 619-625.
 PAULUS VI, alloc., In questo giorno, 20 feb. 1972, AAS, 64(1972), 206-212.
 PAULUS VI, alloc., Ancora una volta, 20 sep. 1972, AAS, 64(1972), 615-620.
 PAULUS VI, alloc., Ben volentieri, 25 ago. 1976, Insegnamenti di Paolo VI, 14 (1976), 675-678.
 IOANNES PAULUS II, alloc., A vous, 28 ago. 1980,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I2(1980), 468-474.
 IOANNES PAULUS II, cost. ap. Ut sit validum, 28 novembre 1982, in AAS 75(1983) I, 423-425;
 IOANNES PAULUS II, alloc., Vi ringrazio, 6 mag. 1983,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II(1983), 1161-1165.
 BENEDETTO XVI, La Chiesa ha bisogno di voi per compiere la sua missione, Discorso al partecipanti alla CMIS sul 60° anniversario di PME, 3 feb. 2007.
 FRANCESCO, “Svegliate il mondo!”, Lettera Apostolica del Santo Padre Francesco a tutti i consacrati in occasione dell'Anno della Vita Consacrata 2014.
 FRANCESCO, Udienz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e all'incontro promosso dalla Conferenza Italiana degli Istituti Secolari, 10 mag. 2014.
 FRANCESCO, Messaggio del Santo Padre ai partecipanti al Convegno della Conferenza Italiana degli Istituti Secolari, 23 ottobre 2017.
 FRANCESCO, Motu Proprio, Communis Vita, 19 marzo 2019.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alla Presidente della CMIS, 2 febbraio 2022, in occasione del 75° anniversario della PME.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in occasione dell'Udienza avuta dalla CMIS, 25 agosto 2022,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SACROSANTUM OECUMENICUM CONCILIUM VATICANUM SECUNDUM,

const. dog., Lumen Gentium, 21 nov. 1964, AAS, 57(1965), 5~71.
SACROSANTUM OECUMENICUM CONCILIUM VATICANUM SECUNDUM,
decr., Perfectae Caritatis, 28 oct. 1965, AAS, 58(1966), 702~712.

3. 교황청과 장관 문헌

SACRA CONGREGATIO DE RELIGIOSIS, instr., Cum Santissimus, 19 mar. 1948,
AAS, 40(1948), 293~297.
CIVCSVA, Consacrazione e secolarità, Lettera ai Vescovi della Chiesa Cattolica sugli
Istituti Secolari. giugno 2017. (번역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그리스도의
가르침, 2018년 57호, 141~152.)
CMIS, Gli Istituti Secolari, Roma, 1984.
Card. Tarcisio, TARCISIO, La secolarità parla alla consacrazione, 18 luglio 2012.
Card. Braz de Aviz, BRAZ DE AVIZ, Gli Istituti Secolari e la comunione ecclesiale,
23~28 luglio 2012.
SCE, dich. Praelaturae personales, 23 agosto 1982, in AAS 75(1983) I, 464~468.

4. 저서들

ALBERTINI M., Gli istituti secolari e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n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APO, (1983), 560~568.
BEYER J.,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BEYER J., “La secolarità degli istituti secolari”, in Spiritualità degli Istituti Secolari,
Milano 1973, 57~104.
BEYER J., “Secolarità e consacrazione della vita negli Istituti Secolari”, in Gli istituti
secolari. Consacrazione, secolarità, apostolato, Roma 1970, 45~92.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I.
DIERNA A., Una consacrazione secolare per una missione laicale, VC, 25(1989),
780~791.
FAVALE A.(cura). Movimenti ecclesiali contemporanei, Roma, 1982.
LAZZATI G., “«Secolarità» e «Istituti Secolari»”, in Secolarità e vita consacrata,
Milano 1966, 45~86.
MOIOLI G. “«Consacrazione» e «secolarità»: problema degli Istituti Secolari o
problema ecclesiologico?”, in 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d’oggi, Roma
1979, 11~52.

OBERTI A., *La Secolarità consacrata nel Magistero pontificio*, VC, 29(1993) 457~467.

OBERTI A., “La vocazione de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in *Gli istituti secolari nella Chiesa d’oggi*, Roma 1979, 159~192.

OTTINGER B. M., FISCHER A. S., *Secular institutes in the 1983 code. A new vocation in the Church*, Maryland 1988.

김길민, 「2014 서울 ACSI(Asia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와 재속회에 관한 교회 문헌을 통해서 본 한국 재속회」, 『이성과 신앙』 57(2014), 133~199.

김길민, 「교회법전에 따른 봉헌생활과 봉헌생활회」, 『사목』 2004, 36~50.

김길민(Kilmin Kim), *L’identità degli Istituti Secolari*, *Dissertatio ad Doctoratum in Facultate Iure Canonico*, Roma 1994.

비오 12세 교황이 사도 헌장 *Provida Mater Ecclesia*로 “재속회”를 처음 인가한 지 76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온전한 재속성(*piena secolarità*)을 지향하며 침투하는 회(*gli Istituti di penetrazione*)와 공동사도직을 하는 협동하는 회(*gli Istituti di collaborazione*)로 두 범주의 재속회가 존재하며, 이들의 정체성을 더욱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재속성(*Secolarità*)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다른 형태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회들이 재속회라는 한 울타리에 있다. 이 현상이 나타난 모습과 발전 과정을 교도권의 가르침과 재속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직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고찰한다.

재속성과 봉헌을 통합하려는 이들의 요청은 한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PME를 통해서 재속회가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였기에 이들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사도직을 보충하는 존재였다. 1년 후에 나온 자의 교서 *Primo Feliciter*는 이들이 현실에서 했던 여러 경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소임을 인정하였다. 재속성과 봉헌을 종합하면서, 이와 결부된 재속회원의 사도직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부터 세상을 성화시키며 주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세상 것을 바꾸는 것이기에, 고유하며, 재속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도직이다. “까스텔누오보 폴리야니 회의”와 “완덕신분에 대한 전체 정기회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다양함이 인정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발전된 평신도 신학이 녹으면서, 세상 것을 다루는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재속회에 대해서는 재속성과 세상에서의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회 재속회 국제회의”에서는 합법적인 다양성(*legittimo pluralismo*)을 말한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재속회인 이유를 수도회와 달리 이 세상에 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형태의 삶에 머물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재속성은 세상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세상에 봉사하는 신학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소(il laboratorio sperimentale)” 즉 실험실이라며, 올바른 다양성(giusto pluralismo)을 강조한다.

1983년 새 교회법전에 “재속회에 대한 규정들”이 새로이 삽입되었다. 재속회를 수도회와 같은 위치로 놓으면서, 봉헌생활회로서의 공통점과 수도회와 다른 재속회만의 고유한 규정들을 따로 다루었다. 재속회원의 삶은 온전히 사도직이 되어야 한다. 이 사도직은 성직자 회원과 평신도 회원의 상황에 따라 구별된다. 온전한 재속성을 지향하는 회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입장에서 공동의 집이나 공동 사업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1983년 ‘수도회와 재속회 성’의 전체 회의에서는 재속 성소는 수도 성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소이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부터 이들의 성소를 이해해야 하고, 온전히 수도회에 관한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재속회들이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여러 모습임을 인정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들에게서 봉헌과 재속성, 사도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형식의 삶을 산다. 다양한 영성 때문에 다양해지며, ‘건강한 다양성’(sano pluralismo)이 필요하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서 재속회는 새로운 봉헌 형식이며, 역사 속에서 육화의 신비를 살아가고, 효모처럼 모든 곳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도직을 수행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재속회원의 사도직은 무엇보다 세상 안에 숨겨진 존재로서,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는 실험체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화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채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전체적 흐름 속에 재속회의 사도직을 종합하면서, 더불어 수도회와 닮으려는 유혹과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재속회, 사도직, 재속성, 봉헌, 바티칸 공의회, 세상, 교도권, 다양성